



# Employment Standards Branch FACTSHEET

이 안내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. 이것은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. 법의 해석과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기준법과 규정(Employment Standards Act and Regulation)을 참조하십시오.

July 2016

## 가사도우미

가사도우미는 고용기준법(*Employment Standards Act*)과 규정이 적용됩니다. 이 같은 조항들에는 초과근무 수당, 법정 공휴일과 휴일 수당, 연가 휴가, 휴가 수당, 최저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.

### 가사도우미의 정의

가사도우미는

- 고용주의 가정집에 고용되어 요리나 청소, 육아, 그 밖의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. 그리고
- 고용주의 가정집에 거주한다.

### 서면 합의서 필수

가사도우미와 고용주 사이에는 반드시 서면 고용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.

합의서에는 가사도우미의 직무, 근무 시간, 임금, 숙식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에게 이 합의서의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.

가사도우미가 고용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초과근무 시간 만큼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

가사도우미가 일당 8 시간 또는 주당 40 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한다면 반드시 이

초과근무 시간은 초과근무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.

고용기준법 규정은 숙식비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명시합니다. 이 숙식비는 월 \$325를 넘으면 안 됩니다.

### 가사도우미 등록

가사도우미의 고용주는 고용기준국에 고용주와 가사도우미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등을 알려야 합니다. 이 등록은 가사도우미가 일을 시작하고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
고용주는 6 개월마다 고용기준국에 이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. 이 통지는 어느 고용기준국 사무소에서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직업 소개소에서 고용주에게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면 해당 직업 소개소는 고용주에게 고용기준국에 가사도우미를 등록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.

가사도우미 고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[www.gov.bc.ca/EmploymentStandards/](http://www.gov.bc.ca/EmploymentStandards/)



Employment Standards Branch

For more information:

Phone: 1 800 663-3316

or 250-612-4100 in Prince George

Website: [www.gov.bc.ca/EmploymentStandards/](http://www.gov.bc.ca/EmploymentStandards/)

Domestics - Korean